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0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양금희·류성걸·박완수

태영호・구자근・황보승희

성일종 • 한기호 • 김정재

전주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·단체의 장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,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을 명시하고,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따라 성희롱"을 "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(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)을 대상으로 성희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점검결과를"을 "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
- 2.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직원 등의 교육참여율(국가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의 경우 참 여여부와 그 명단을 포함한다)
- 3.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
- 4.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여부
- 5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조치) ① -----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--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 실시,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, 장 등에 소속된 사람(해당 국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 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 발방지대책의 수립·시행 등 필 다)을 대상으로 성희롱-----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 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 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 -----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 각 호의 사항을-----에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 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1.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<신 설> 계획 수립 여부

<u><신 설></u>	2.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
	사람의 교육참여율(국가기관
	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
	장의 경우 참여여부와 그 명
	단을 포함한다)
<u><신 설></u>	3.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
<u> <신 설></u>	4.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
	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
	의 수립 여부
<u> <신 설></u>	5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